

아산 한신더휴 | 당첨자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⑤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 진단서만 인정)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 장소에 비치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가 입양인 경우
		○	⑧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 안내문은 청약자격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만을 요약하였으며,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오류·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